

##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문기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7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.

발의자 : 문기호, 홍영진, 안영호  
김태욱, 정재환, 김도운  
강혜순

### 1. 제정이유

- 노인인구가 급증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재사회화와 디지털기기 교육 등 노인들이 사회적응 및 대처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교육을 활성화 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(안 제1~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노인교육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노인교육 사업, 사무의 위탁, 노인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~7조)
-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8~9조)

###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# 4.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### 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5. 9. 24. ~ 9. 30. (6일간) / 의견없음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#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노인”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노인교육”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,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3. “디지털생활교육”이란 휴대전화,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
2.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
3.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
4.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·개발과 지원
5. 노인교육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계획

6.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노인교육 사업)**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
2.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
3. 노인교육 교재 개발
4.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
5.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

6.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6조(사무의 위탁)**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따른다.

**제7조(재정지원)**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8조(협력체계 구축)**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
**제9조(포상)**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 관련법령 】

### □ 노인복지법

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- 제15조(평생교육과 정보화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,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·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,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 『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##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·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2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3.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,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
4.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2. 미첨부 사유

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작성자

- 소 속: 노인장애인과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- 이 름: 유은진
- 연락처: 290-3612